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78호

제20회 건축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

국내외 **국가 건축문화발전**에 **뚜렷한 공로**가 있는 **건축인** 및 **건축관계자**를 **적극 발굴**하여 **포상**하고자 아래와 같이 **정부포상 후보자**를 **공모**하오니 많은 **추천** 바랍니다.

2024년 1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Ⅰ 포상 개요

○ **(포 상 명)** 건설발전(건축의 날) 유공

○ **(포 상 일)** 제20회 건축의 날 행사(9~10월경)

* 행사준비 과정에 따라 일시는 변경 가능

○ **(포상대상)** 국가건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축인 및 건축관계자*

* 건축사, 대학교수, 건축기능인 및 관련 분야 종사자

○ **(포상규모) 총22명**(미정 / 정부포상 10명, 장관표창 12명)

합 계	정 부 포 상 (안)					국토부 장관 표창
	계	훈 장	포장	대통령 표 창	국무총리 표 창	
22명	10명	1명	1명	3명	5명	12명

※ 포상규모는 관계기관 협의 및 공적심사 후 최종 확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음

II 건축의 날 유공 포상 기준

○ 건축 **기획** 및 **설계** 등을 통해 품격 있는 **공간환경 조성**에 기여한 자

○ 건축 관련 **학술, 연구, 교육** 분야에서 **탁월한 성과**를 보인 자

○ **녹색건축**을 통한 **기후변화 대응**에 기여한 자

○ 건축 안전 등을 위한 **신기술 개발** 및 **새로운 시장 개척** 등에 기여한 자

○ 한옥 등 **건축 자산**의 **보전** 및 **활용** 등에 기여한 자

○ 건축 관련 **사진, 영상, 방송** 등의 분야에서 **건축문화 진흥**에 기여한 자

○ **건축**의 **품격**을 높이는 데 기여하거나 건축을 통해 **사회 공헌**에 기여한 자 등

III 정부포상기준

□ 수공기간

○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표창의 경우, 단체 포함)에게 수여함

□ 재포상 금지기간

○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**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**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.

○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-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○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○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□ 추천 제한

○ **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**

○ **형사처분**

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나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○ **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**

○ **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**

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나) '임원'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회사별 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○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
○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Ⅳ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

□ 추진절차

< 포상 추진절차 >

포상후보자 공모·접수	⇒	포상추천자 심사	⇒	범죄수사경력 조회, 공개검증 등 실시	⇒	최종후보자 추천 (국토부→행안부)
('24.1~2월)		('24.3월)		('24.4~7월)		('24.8월)

* 추진절차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 후보자 추천방법

○ (**추천권자**) 국민 누구나 추천가능

○ (**추천대상**) 국가건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축인 및 관계자

○ (**추천기한**) 2024. 2. 29.(목) 18:00까지

※ 다만, 연중공모가 가능하므로 위 추천기한을 도과할 경우 차년도 후보자 추천으로 접수

○ (**추천방법**) 후보자 추천서 등 제출서류 등기·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

※ 제 출 처 : **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대년 주무관 앞**

-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동(국토교통부), 우편번호 30103
- 연락처 : 044-201-3777
- 이메일 : gim285@korea.kr

○ **(제출서류)** 아래 ①~④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

① 건축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(별지 제1호 서식)
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
③ 공적요약서(별지 제3호 서식)
④ 정부포상 후보자 인사기록요약서(별지 제4호 서식, 공무원만 해당)

※ 공적조서(별지 제5호 서식) 등 정부포상 진행과정에서 피추천인에게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3 유의사항

○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

[별지 제1호 서식]

「건설발전 유공(건축의 날)」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

추 천 인	성 명* (단체명)		관 계*	(피추천인의)
	주 소*		e-mail	
	전 화*		휴대전화*	
피추천인 (포상후보자)	성 명* (단체명)		생년월일	
	주 소*		근무처 (직업)	
	전 화*	(자 택) (사무실)	휴대전화*	
	주요경력 (기간)	· · · ·현		(~) (~) (~) (~)
공적내용*	- 각 분야의 공적 내용을 기재하되, 내세울만한 특별한 공적은 육하원칙(언제, 어떤 직위에 있을 때, 얼마동안, 어디에서, 무슨 일을, 어떻게 추진하여 어떤 성과를 거둠 등)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※ 공적 내용을 중심으로 포상추천여부를 판단하므로 충실히 작성			

공적내용*	

* **표시한 사항**은 **필수 기재사항임**(단,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)

《 추천시 유의사항 》

① 피추천인(포상후보자)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근무처, 전화번호(자택·사무실) 등 **인적사항과, 주요경력,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**

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**실명이 아닌 경우** 또는 **주소·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**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

③ 피추천인의 성명,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

④ 피추천인의 **공적사항 증빙자료**(사진, 관련서류, 언론보도 등)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,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

⑤ **필수 기재사항**(*표시)

- 추 천 인 : 성명(단체명), 관계(피추천인의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
- 피추천인 : 성명(단체명), 주소, 전화 또는 휴대전화, 공적내용

[별지 제2호 서식]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(포상 후보자 작성)

□ 포상 후보자

성　　명			
소속(주소)		직 위(급)	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'신고의무 사항'을 알면서도 **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** 「상훈법」제8조제1호의 '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'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**취소될 수 있음**

◆ **신고의무 사항**
- ○ **경찰·검찰**의 **조사(수사)**를 받게 된 경우
- ○ **형사 사건**으로 기소된 경우
- ○ **감사원** 또는 **감사부서의 조사**를 받게 된 경우
- ○ **징계** 또는 **불문경고 처분**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- ○ 당해 연도 **타 포상 중복 지원** 여부

※ 「상훈법」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4.　　.　　.

성명　　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**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**될 수 있습니다.

1. (**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**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**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**, 포상 후보자 **공개검증 및 공적심사**, 정부포상 결정·취소 시 관보게재,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
2. (**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**) 「상훈법시행령」 제33조에 따라 성명, **주민등록번호**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**군번(군인의 경우)**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3. (**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**) **서훈기록부는 영구,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,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,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**

<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[별지 제3호 서식]

공 적 요 약 서

소 속	직 위	한글성명 한자성명 (생년월일)	수공 기간	추천 훈격	징 계 기서훈	공 적 개 요 (50자이 내)

[별지 제4호 서식]

인사기록 요약서

1) 소 속		2) 직 위		3)직급	
4) 성 명	한 글		5) 주민등록번호		
	한 자		6) 군 번(군인)		
7) 구 분	□ 공무원 □ 민간업체 □ 공사공단 □ 기타				

소 속	재 직 기 간	소 속	~ (년 월 일)
	~ (년 월 일)		~ (년 월 일)
	~ (년 월 일)		~ (년 월 일)
	~ (년 월 일)		~ (년 월 일)
	~ (년 월 일)		~ (년 월 일)
합 계 ㉮	년 월		

17)제외기간	휴직 :		직위해제 :
합 계 ㉯	년 월 일		

18) 실 재직기간(㉮ - ㉯)	년 월	19)추천훈격	

20)징계,형벌	종 류	일 자	21) 과거포상	포 상 명	수여일자
			(장관표창 이상)		

22) 작성자(인사담당자)				23) 확인자(인사담당관)			
직 급		성 명	인	직 급		성 명	인

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24) 기 관 명 : 직 인

[별지 제5호 서식]

공 적 조 서

(앞면)

(1) 성 명	한 자(원명)		
(2) 주민등록 번 호 (생년월일)		(3) 군 번 (군인의 경우)	
(4)본적(국적)		기 재 불 요	
(5) 주 소			
(6) 직 업		(7) 소 속	
(8) 직 위		(9) 등 급 (직급 · 계급)	(10) 근무기간(년월) (수공기간)
(11) 공적요지 (50자 내외)		(12) 공 적 분 야 코 드	

(13) 추천훈격		장관표창	(14) 추천순위	
조 사 자				
(15) 소 속			(16) 직 위	
(17) 직 급			(18) 성 명	(인)

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추 천 관 직 위 성명 (인)

(뒷 면)

주 요 학 력 및 경 력			
(19) 년 월 일	(20) 이 력	(21) 년 월 일	(22) 이 력
과거 포상기록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			
(23) 년 월 일	(24) 내 용	(25) 년 월 일	(26) 내 용'
(27) 공 적 사 항			
반드시 2,000자 이상 작성			

